

속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144
제정	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현행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는 "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2. 조 롑 개 정

- 현행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는 "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3. 참 고 사 료

- 강원도 조례 제2124호 - 98 (1993. 3. 24)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
- 시정조례심의위원회 회의록 - 19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"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" 를 "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의"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
제6조(현장지도여비) 지방재정법시행령	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	제6조(현장지도여비) - - - - -	- - - -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
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	직접 출장하여 현지도 감독에 임하는	제4항제5호의 - - - - -	- - - - -
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	의 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	- - - - -	- - - - -
다.		- - -	